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용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8. 8.

발 의 자 : 조용천·이동섭·박홍근
강훈식·김철민·남인순
이상헌·기동민·금태섭
박재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단계에서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음.

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,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,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201조).

또한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통
신을 제한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고자 함
(안 제98조제3호의2 신설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타 인과의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

제201조의 제목 “(拘束)”을 “(拘束 및 조건부 석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순서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1.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.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.
2.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또는 기한을 정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

부하는 결정

⑤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할 수 없다.

1.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
2. 피해자,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
3. 피의자가 사형,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

⑥ 검사는 제4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⑦ 제4항제2호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8조, 제99조,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00조의2, 제102조(제1항 및 제2항은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석을 허가하는
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례) 제2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관할지
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8조(보석의 조건)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~ 9. (생략)</p> <p>第201條(拘束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 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.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.</u></p>	<p>제98조(보석의 조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3의2. 「<u>전기통신기본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타인과의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第201條(拘束 및 조건부 석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의 請求를 받은 지방 법원판사는 다음 순서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기각하는 결정.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檢事에게 교부한다.</u></p>

<신 설>

2.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또는 기한을 정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
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

⑤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할 수 없다.

1.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

2. 피해자,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

3. 피의자가 사형, 무기 또는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
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
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

⑥ 검사는 제4항제2호의 결정
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
자가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
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
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
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
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⑦ 제4항제2호의 결정에 관하
여는 제98조, 제99조, 제100조
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00조
의2, 제102조(제1항 및 제2항은
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로
한정한다), 제103조 및 제104조
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
판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
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
있다.

⑧ (현행 제5항과 같음)